



## ‘신앙고백서에 동의’한다는 의미에 관한 지침

### 사무총장실

최근 총회의 그라바멘(gravamen,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결정에 따라 특정 교리와 씨름하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허용되는 여지에 대해 여러 CRC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총회 규정이 요구하는 ‘온전한 동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개혁주의 신앙고백 앞에서 성실과 겸손, 순종으로 섬기고자 하는 교회 리더들에게 과도한 기준을 부과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총회는 CRC 교리 기준에 관해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동의(affirmation) 수준을 다루었으며, 두 총회 모두 교회의 신앙고백 기준을 존중하는 것이 은혜와 인내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앙고백서에 있는 교리를 아무런 유보 없이 동의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교단으로서 언약을 맺은 것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신중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관한 부분은 직분자 서약서 및 관련 자료에 여러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 직분자 서약서: “우리는 세 가지 신앙고백…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신앙고백…”, “우리는 그 신앙고백들에 의해 형성되고 인도받을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신앙고백들 중에서 어느 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믿게 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교회에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
- 관련 자료: “아무런 유보 없이 확신한다…”(A.1) “이 교리들이 모두 최선의 방식으로 진술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A.2) “신앙고백서에 고백된 교리에만 속박되며, 그 안의 인용문이나 암시적 표현에까지 속박되는 것은 아니다…”(A.3) “직분자는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에 대해… 의사를 밝혀야 한다.” (B.1)

2024 총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서문과 주요 권고안에 따르면, 2024 총회의 주요 쟁점은 신앙고백 서약 절차의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에 있었습니다(2024 총회회의록, p. 871). 따라서 신앙고백이나 신앙고백적 해석에 담긴 교리에 영구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상태로는 CRC

직분자로 섬길 수 없습니다(2024 총회회의록, p. 868-871). 그런 반대 의견은 반드시 그라바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교회헌법 제5조 a항, 보칙). 예비 직분자는 직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 총회의 결정은 신앙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총회는 그라바멘은 “단순히 불편하거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다”라는식의 인식이 점점 커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직분자 서약서; 2025 총회회의록 p. 670 참고). ‘그라바멘’이라는 단어는 무겁고 심각한 사안을 가리킵니다. 총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깊은 의문 혹은 확고히 자리 잡은 신념”(교회헌법 보칙 제5조 a항, A, 2)을 뜻합니다. 직분자가 단순히 신앙고백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라바멘을 필요로 하는 불복이나 이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과정에서 지역 교회의 분별은 과거에도 지금도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현행 총회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담, 검토, 판단’(B.1)을 제공할 책임이 카운실에 있다는 사실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카운실이 어떤 직분자가 그라바멘 절차를 거친 후 신앙고백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면, 동일하게 어떤 어려움이 실제로 그라바멘을 요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카운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라바멘(gravamen, 신앙고백 이의제기)에 관한 2024 총회의 결의 서문과 일치합니다. 거기서는 “‘신앙고백상의 어려움(confessional-difficulty gravamen)’에 대한 ‘판단’은, 카운실이 해당 직분자의 어려움이 직분자 서약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인지, 혹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결정할 때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024 총회회의록, p.870; 2025 총회회의록, p. 671).

총회 규정은 “아무런 유보 없이”라는 표현이 특정 교리의 의미나 그 교리가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 온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2 및 B.3). 실제로 CRC는 신앙고백서들에 대해 ‘역사비평적’ 접근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이는 오늘날 신앙고백서의 특정 표현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등장한 역사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회는 벨직 신앙고백 제4조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언급한

부분이나, 제34조에서 재세례파가 유아 세례를 거부한 것을 ‘오류’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는 CRC가 이 신앙고백서들을 수정하기보다는, 다수의 개혁교회들과 공유하는 문서로서 “특정 신학적 논쟁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회는 “신앙고백서들에 대한 지나치게 문자적인 접근”을 경계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2002 총회회의록 p. 499; 1959 총회회의록 p. 184).

“믿음에 관한 질문과 써俚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시편의 고백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헌법 제5조와 그 보충 조항을 2024년과 2025년 총회의 서문과 결정들에 비추어 읽어보면, 이 중요한 사실이 다시금 확증됩니다. 결국 신앙고백 서약 과정은 “온전한 동의”와 “신앙고백서가 고백하는 교리에만 한정되어 구속”이라는 두 원칙 사이의 균형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두 표현 사이의 경계는 종종 신중한 분별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라바멘 절차는 본질적으로 목회적인 성격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B.7 참조). 직분자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고백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이 과정은, 당사자의 양심에서 출발하며, 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교회 카운실과의 대화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절차는 CRC의 교리적 기초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이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진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신앙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써俚하는 이들과, 분명하고 확정된 기준을 선호하는 이들 모두에게 신뢰와 상호 존중을 요구합니다. 또한 신앙고백서(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를 전심으로, 아무런 유보 없이 고백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임을 인정합니다. 이 서약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고백을 통해 CRC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증거하며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